**주식양수도계약서**

본 주식양수도계약(“본 계약”)은 2017년 [ ]월 [ ]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매도인 대주주 (00. 00. 0. 생)

서울시

매수인 김 (00. 0. 0. 생)

서울시

이하 매도인, 매수인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전 문**

매도인은 본 계약에 정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 ] (“회사”)의 보통주식 00,000주(“대상 주식”)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단, 매수인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 주식을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대상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상호 합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주식 및 매매 조건**

본 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회사의 보통주식 및 매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주의 금액 : 0,000원

2. 주식의 수 : 00,000주

3. 매매대금 총액 : 00,000,000원

**제3조 주식 인수 및 권리 이전**

(1) 매수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한다.

(2) 대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매도인은 회사로 하여금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제2항의 권리 변동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2. 대상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발행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거나 상환되어 소멸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우려도 없다. 매수인이 대상 주식에 대한 소유권 및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상실할 위험이 없다.

**제5조 매수인의 주식 처분**

매수인은 대상 주식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경업금지**

(1) 매수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향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신회사 설립,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기술자문, 개인사업의 창업 등 회사의 이해관계에 배치되거나 회사와 경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매수인의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수인이 회사에서 퇴사한 후 1년까지 유효하다.

**제7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일에 본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다.

(2) 매도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매수인이 대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매수인이 직원으로서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경우

4. 매수인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직업 또는 영업을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5. 매수인이 제8조에서 정한 기간동안 근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대상 주식을 반환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제 시점에 있어 회사 주식 가치의 변동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 주식의 가액과 총 인수대금의 가격 차익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가격 차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한다.

**제8조 근속 의무**

매수인은 회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3 ]년 후까지 회사에 근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회사를 퇴직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액면가로 대상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진술하거나 보장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손실 및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종료한다.

1. 당사자들 간에 본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2. 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내용 변경**

본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으며, 관습,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개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 기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존재, 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및 본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일체를 기밀로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약속, 조건 또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이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제15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선의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입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대주주 (00. 0. 0. 생) (인)

서울시

매수인 김 (00. 0. 0. 생) (인)

서울시